

이사회 규정

제정 2019-10-01

개정 2023-07-25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이사회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제4조(구성)

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제5조(의장)

이사회 의장은 제7조 제1항의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.

제6조(이사회 개최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매 3월에 1회 개최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청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
제7조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소집한다. 단, 이 소집권자의 부재나 유고시에는 이사인 회장, 부회장, 사장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되, 회장, 부회장, 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임원 인사관리 규정상 Grade 구분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총재적 이사의 3분의1 이상이 공동으로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제1항에서 정한 소집권자에게 이사회 소집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때 소집권자는 1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의 경우 그 청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되거나 또는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청구자 공동명의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7조의2(대표이사의 직무대행)

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인 회장, 부회장, 사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되, 회장, 부회장, 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임원 인사관리 규정상 Grade 구분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이사회 소집)

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직전일까지 목적, 일시, 장소를 서면, 구두, 전화, FAX, E-MAIL 및 기타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 단, 이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9조(의결권, 의결방법)

- ① 이사는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.
- ②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
-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10조(의결권 제한)

- ①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사정족수 산정의 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(부의사항)

- ①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를 얻어야 한다.
 1.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부의할 안건 및 보고에 관한 사항
 2. 신주의 발행
 3. 준비금의 자본전입
 4. 주식의 소각
 5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6. 사장 이상의 집행임원의 선임 및 해임.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집행임원에 대하여는 대표 이사에 그 권한을 위임함
 7.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 8.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, 폐지
 9.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10.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
 11. 신규사업의 결정에 관한 사항
 12. 이사회 규정의 개정

- 13.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의 제·개정
 - 14. 국내외 지점 및 법인(당사가 최대주주이거나 1인 주주인 법인)의 설치, 이전 및 폐지.
단, (i) 지점을 제외한 국내외 사무소 등의 설치, 이전, 폐지, (ii) 해외 지점의 동일 국내에서의 이전, (iii) 프로젝트용 현지법인 또는 사무소의 설치, 이전, 폐지, 철수에 대해서는 부의대상에서 제외함
 - 15. 사채의 모집에 관한 사항
 - 16. 자산총액의 10% 이상의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
 - 17. 자본금의 10% 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
 - 18. 관계회사 주식(자사주 포함) 매각에 관한 사항
 - 19. 이사와 회사 간 거래
 - 20.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또는 부여의 취소
 - 21. 최대주주(그 특수관계인 포함)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로써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거래
 - 22. 회사가 기부하고자 하는 금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기타 회사의 기부금 출연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 - 23.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기타 회사경영을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1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결과
 - 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
 - 3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제12조(이사회 내 위원회)

-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-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-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-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-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13조(위임)

이사회는 법령, 정관 및 본 이사회 규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.

제14조(관계인의 의견청취)

-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관계 임직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15조(의사록)

-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16조(주관부서)

- ③ 이사회에 간사를 따로 둘 수 있다.
- ④ 간사는 회의의 소집통지, 의사록 작성 등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.

부 칙(2019.10.01)

- 1.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3.07.25)

- 1. 이 규정은 202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.